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68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정윤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혜원

변론 종결 2021. 3. 12.

판결 선고 2021. 4. 9.

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21894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9. 3.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1,2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탁관)내지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채권 중 순번 2번, 3번, 5번, 6번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4행부터 4쪽 16행까지 실시된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쪽 17행의 "나. 취소범위 판단"을"다. 취소범위 판단"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5. 9. 15.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C 대표이사 H의 은행계좌에 18억 9,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중 15억 원을 상환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2019. 2. 28. 1억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포함한 미상환액 4억 1,000만 원을 분할상환받기로 하되, 그 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로 C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C은 피고가

제공한 자금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각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기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비록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5. 9. 15.부터 2019. 3. 12.까지 H의 은행계좌에 18억 9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중 15억 원을 상환받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H의 남편인 AP를 주채무자로 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고(피고는 AP가 C의 실질사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H와 C은 AP의 위 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보증한 사실, C이 피고의 위 지급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2. 28. 기존 대여금 채권이 3억 1,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담보로 양수하기로 하면서 추가 제공한 자금은 1억 원에 불과한 점, ② 그에 비하여 양도된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의 금액 합계가 383,428,044원에 이르는 점, ③ 위 1억 원이 C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계속이나 자력회복에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영업계속을

위한 자금 마련과 순환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업계에서의 신용유지에도 중요한 다량·다액의 매출채권을 특정대여금 채권자에게 일괄 양도한 사정 및 앞서 본 C의 채무초과 정도를 고려하면, C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채권양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자신은 C에 금원을 대여한 대여금 채권자일 뿐 C과 거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여 C의 영업상황, 채무초과 및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것을 알고서 그 실질사주 내지 대표이사인 AP, H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왔고 그규모도 상당한 규모라고 할 것인 점, ②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다액의 금전거래관계를 지속한 피고는 C의 영업상황이나 채무변제여력에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매출채권이 수금이 되어야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임에도 금액 합계383,428,044원의 별지 제1목록 기재 11건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도 부동산 등 달리 제공될 담보가 여의치 않아서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④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받은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6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채권양도일인 2019. 3. 14.로부터 가까운 2019. 3.26. 제3채무자 (주)E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상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판사 황정수

제 1 목 록

순번	제3채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채권금액	제3채무자 주소
1	㈜K	L	32,929,973원	화성시 M
2	J㈜	N	17,084,744원	김포시 O
3	㈜E	P	26,986,292원	화성시 Q
4	㈜R	S	31,700,859원	화성시 T
5	㈜D	U	19,967,026원	화성시 V
6	㈜W ¹⁾	X	31,296,977원	화성시 Y, 1층(Z동)
7	㈜AA	AB	30,657,562원	화성시 AC
8	AD㈜	AE	22,346,630원	화성시 AF, 1층
9	㈜AG	AH	29,898,869원	평택시 AI
10	㈜AJ	AK	80,559,112원	김포시 AL
11	㈜AM	AN	60,000,000원	화성시 AO

1) 상호가 2019. 3. 12. ㈜W에서 ㈜F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는 2019. 3. 14. 마쳤다.

제 2 목 록

1. 피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채권

가.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3047호

공탁금 : 19,164,443원

공탁자 : 주식회사 F

공탁일 : 2019. 4. 1.

나.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3025호

공탁금 : 27,723,575원

공탁자 : 주식회사 E

공탁일 : 2019. 3. 29.

2.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19. 4. 26. 자 합의서에 따라 2019. 4. 29.까지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
16,800,000원. 끝.